

November 03,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58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10. 26. ~ 10. 30.)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국토부1]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

2020. 10. 28.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실현, ② 미래차+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화, ③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④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 등이 있음

[참고자료]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



[참고자료]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본보고서



[국토부2] 디지털트윈·브이월드 발전 방향 관련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디지털트윈은 자율차, 드론 등 미래 신사업의 기반으로서, 국토부는 지상·지하 공간을 디지털트윈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2020. 10. 29.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회의에서는 ① 디지털트윈 분야에서의 3차원 공간정보 활용, ② 공간정보와 이종산업 간 융복합, ③ 브이월드를 통한 디지털트윈 활용 등을 논의함

[참고자료] 디지털트윈 브이월드 발전 방향 온라인 세미나



[과기부] 한국판 뉴딜 선도를 위한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발표

2020. 10.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일자리위원회(대통령직속) 공동으로 연구소기업 1,000호 설립의 양적 성장을 넘어 씨앗기업에서→K-선도 연구소기업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소기업 창업 활성화, ②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③ 지역혁신거점으로서의 연구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이 있음

[참고자료] 한국판 뉴딜 선도를 위한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 발표



[산자부]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출범식 개최

2020. 10. 28.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출범식을 개최함. 이는 8. 20.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발표한 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성장 전략의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① 향후 3년간 10개 분야 연대를 결성하고, 100개 디지털 전환 과제를 발굴 예정, ②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혁신성,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고도화하고, 자금, 연구개발, 규제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예정, ③ 향후,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혁신 과제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법」을 국회와 협력하여 조속히 마련할 계획 등이 있음

[참고자료]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 결성식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법안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0. 27.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함. 주요내용으로는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과 거래상대방이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목적 및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만 자금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첨부하도록 하려는 개정임

> 입법예고 법안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원회는 10. 28.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함.

구 분	법률	시행령(안)
적용 대상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을 열거 → 추가 적용대상 위임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 추가
진입 규제	개별법상 인허가·등록된 자는 금소법상 등록된 자로 간주, 그 밖의 자는 금소법상 등록 의무화 → 등록요건 위임	- 대출모집인·독립자문업자 등록요건 마련 *온라인 업자는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탑재 의무화
내부 통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 기준 마련 시 준수해야할 사항 위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설치, 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검토 등 규정
영업 규제	- 개별법상 산재되어 있던 6대 판매규제* 등 영업규제를 통합 → 추가 규율사항 위임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금지	- 추가 규율사항을 상세 규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 *예: 판매 시 상품속지의무 부과, 행정지도로 운영해오던 대출모집인 규제의 법규화 등
소비자 권리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신설 → 적용대상 등 위임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外에는 모두 적용
분쟁 조정	現 금융위설치법 규정 이관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위임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대폭 개선
감독 제재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부과기준 위임	과징금 상한(수입등의 50%)의 기준인 “수입등”을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으로 규정

[과기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기부는 2020. 10. 26. 부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정보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크고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불이행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신설(안 제13조제2항), ②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안 제41조제1항제1호) 등이 있음

[과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과기부는 2020. 10. 30. 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정하고 침해사고의 예방·확산방지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개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적 장치 추가, ② 보안취약점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절차 및 방법을 별표로 규정 등이 있음

[산자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산자부는 2020. 10. 26. 부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기업은 비밀디자인을 디자인경영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비밀디자인의 물품명칭 및 분류는 공개사항으로 제품개발 전략이 경쟁사에게 노출됨에 따라 제품개발 전략 보호를 위해 비밀디자인 등록공보의 공개사항에서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가 제외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 직제 개편(‘20.7.14)을 반영하여 3인 합의부 체계 운영을 위해 심판장의 자격요건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밀디자인의 비공개 항목 확대(안 제10조 제2항), ② 특허심판원의 심판장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8조 제2항 및 제3항) 등이 있음

[금융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는 2020. 10. 28. 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회계개혁 정착지원단(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 마련된 회계개혁 시장 안착조치 사항 및 기타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안 제12조),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업무 등을 금융감독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4조) 등이 있음.

> 법률 발의안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박홍근의원 등 12인)」

디지털·그린 경제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9%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정무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김병욱의원 등 13인)」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 지연 시에도 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용 내용으로는 ①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여 그 성과를 입증한 경우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정비를 금융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②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마무리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10조제11항). 등이 있음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윤관석의원 등 11인)」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등)

[정무위] 「개인정보 보호법(추경호의원 등 13인)」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자율규약의 작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당초 개정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개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해당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자율규약을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할 과징금, 손해배상액 및 과태료를 산정할 때 자율규약 준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②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등 의무 규정과 과징금, 행정형벌 및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일원화 등이 있음.

[문체위] 「저작권법(이규민의원 등 10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영상저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 이후에도 영상저작물 제작의 일차적 목적이 된 최초 이용을 제외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이용방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그 보상금액과 보상의 방법은 매년 그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와 영상제작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산자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장의 매입·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기업 71개사 중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전체(71개사)의 14.1%인 10개사에 불과하여 실제 지원이 미약하고,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어 지원절차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과방위]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국가인공지능기술위원회, 지방인공지능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인공지능기본계획’과 ‘지방인공지능종합계획’을 수립해, 인공지능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제협력, 민간 참여의 활성화, 인공지능 관련 단체의 설립,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기술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국가인공지능기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며, 그 이행상황 및 인공지능 기술 전반에 대한 평가 등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② 지방인공지능기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인공지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며, 그 이행상황 및 평가 등 국가인공지능기본계획 하에서 각 지역 차원의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육성, 국제협력, 조사연구 및 개발 등을 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자료의 표준화·정문화, 기술 개발 등에 관한 교육·홍보, 기술의 수출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등이 있음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조명희의원 등 12인)」

구글은 최근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자사 앱 마켓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정책을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콘텐츠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상당수 앱·콘텐츠의 소비자 가격이 20~30% 가량 인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

앱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고, 금지사항의 유형으로 ‘앱마켓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결제방법 등을 부당하게 지정·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1항제6호 및 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과방위] 「방송법(정부)」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에 관한 규정은 없고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 또는 협찬고지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미흡함에 따라, 협찬의 정의, 협찬 금지대상, 협찬과 관련된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의무적 협찬고지 사항, 협찬고지 금지 사항 등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복지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홍석준의원 등 12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3항, 제26조의3 신설)

[환노위] 「임금채권보장법(정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의 대상을 퇴직근로자로서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체당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당금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서예지

소속변호사

T. +84-24-3245-4043

E. yjseo@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